

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**1. 審 查 經 過**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4. 9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4. 9
- 라. 上程日字 : 1999. 4. 14, 6. 25

**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 自治行政課長 方景泰)**

가. 提案理由

- 지난 '98년 충남도의 구조조정에 따라 15개 시·군의 조직개편 평가 결과 우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정원을 조정·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중 1명을 감하여 15명으로 하고,  
- 집행부의 총정원을 881명에서 882명으로 조정함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지난 '98년의 충남도의 구조조정 및 15개 시·군의 조직개편 결과 충남도의 행정지시에 의거 서산시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을 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
  -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충남도의 지적사항 및 타시·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을 감하고자 하는 뜻은 십분 이해가 가나
- 의회업무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6.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55 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4. 9. (제 38 회)

#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4. 9.

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9.  
제출자 : 서산시장

## 개정이유

- 도로 부터 시달된 조직개편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·조정하기 위함임.

## 주요골자
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중 1명을 감하여 15명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을 881명에서 882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
## 기타 참고사항

- 관련법규
 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
  - 충청남도 행정 12200-221('99. 1. 25)호

서산시 조례 제 호

#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881명”을 “88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16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97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81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6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1. ----- : <u>882명</u> 2. ----- : <u>15명</u>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(생략)	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(현행과 같음)